

# 우리나라 부부의 가계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평가를 위한 총노동시간 및 노동분담률 분석

## Total Labor Time and The Ratio of Labor Division for Estimating of Economic Contribution to Household on Korean Married Coupl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윤 소 영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Lecturer : Soyoung Yoon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labor during the marriage by estimating the total labor-time of husband and wife and to prove the contribution of labor-time to household.

The statistical life-time research data of Bureau of Statistics were used to prove the overwork of wives compared with husbands during the marriage. The result of the study can help to prove the wife's contribution of labor-time to household.

**주제어(Key Words):** 무보수가사노동가치평가(valuation of unpaid work), 총노동시간(total labor time)

### I. 문제제기

우리 나라에서 부부의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자유 계약제에 근거하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 되지 않은 대부분의 부부의 재산은 법정재산제인 별산제에 근거한다. 별산제란 부부각자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법제로서(이화숙, 1990), 대개의 재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명의로 표시되므로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취득한 실질적 공유재산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부부의 이혼 시점

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90년부터 지난 10여년 동안 이혼율이 11.4%에서 32.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통계청, 2000)에서, 부부의 법정재산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별산제에 근거한 법정재산제의 일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부부공동체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이해진, 1991).

현재 우리나라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요소를 분석한 결과(김찬식,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8),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시행할 때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먼저 확정하고, 확정된 재산에 관하여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참작하여 그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의 노동기여도를 맞벌이형, 가업협력형, 전업주부형 등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부부재산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평가는 1/3 또는 1/2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서울가정법원 판례 368개를 분석하여 여성에게 분할된 재산비율을 분석한 김찬식(1997)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형의 경우 분할비율이 50%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가업협력형과 전업주부형의 경우에는 분할비율이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판례 203개를 분석한 한국여성개발원(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동상황에 관계없이 부부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3분의 1 이상이 많지만,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판례가 여성의 기여도를 2분의 1이 훨씬 넘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를 보면 분할대상이 된 공동재산이 여성의 특유재산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분할비율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기인한다. 전업주부는 직업노동을 통해 직접 화폐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노동기여는 남편의 노동기여를 돕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남편이 획득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직업노동 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비율을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면, 이는 전문화와 교환을 통하여 그 가정의 생산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비율을 선택한 결과이다(Becker, 1965; Berk, 1981; 문숙재·윤소영, 2000). 그러나 이러한 시간비율은 여성의 시장노동에의 기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예를들어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어린 자녀를 가진 주부의 취업을 중단하게 하여 여성 노동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진수희, 1995; 문숙재·김순미·윤소영, 1996; 김태홍, 2000). 또한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에서 남녀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Shelton, 1992; 조희금, 1997).

한편, 가정에서의 노동이 '생산노동'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G. Becker(1965)와 R. Gronau(1973)는 가계생산함수를 통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개발은 최근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1999년 11월 23일-26일 전세계 통계적 전문가들은 방콕에 모여 무보수 노동을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생산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시간사용조사를 대단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여성부, 2001). 이에 우리 나라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을 위해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활용조사를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며,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를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업주부의 노동평가가 경제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으며, 특히 주부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 예로 부부의 재산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전업주부형의

경우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맞벌이형이나 가업협력형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주부의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 정도 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문숙재·정영금, 1993),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한 여러 연구들이 아직까지 재판 실무에 적용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주부의 노동시간 비율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노동 기여를 고려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결 시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논문은 가사노동도 생산노동으로 인정하는 개념을 토대로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산한 총노동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현재 가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주부의 노동가치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산분할 판결시 그 분할 비율에 관하여 기여도설이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부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기여한 총노동시간을 토대로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할 연구의 부족으로 이를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적용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업형태에 따른 남편과 주부의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표준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여성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헌법상 규정된 양성 평등 이념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의 노동분담

전문화와 교환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관하여는 이미 경제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

해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하여 개인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성은 가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가족은 자신들의 복지와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성인 구성원들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단위이다. 따라서, 가족의 목표는 가족의 효용 및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한 가정은 혼인 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내의 총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비율을 선택하게 된다(문숙재·윤소영, 2000).

전문화와 교환이론에 따르면, 가정생산물의 생산은 가족원 중 한 사람이 시장생산에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정 생산에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된다. 각 개인은 각자 따로 살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가족이 되어 함께 살면서 각 영역에서 전문화한 생산물을 교환하는 경우에, 가족 전체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 누가 시장영역에서 전문화되고 누가 가정영역에서 전문화되는지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결정된다. 비교우위에 의하면 생산활동을 각각 하는 경우보다 전문화와 교환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나누어 하는 경우 효용이 극대화된다.

한 영역에 전문화될수록 다른 영역에 소비한 시간이 감소되는 측면은 시간유효성 가설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시간유효성(time availability) 가설에 따르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며 융통성있게 시간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사노동에의 시간 소비는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 중 노동시간에서의 근로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지고 또한 출퇴근시간의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사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전제가 가능하다(홍윤정, 1996).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와 교환을 통한 상호관계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직업노동에는 화폐소득이 주어지지만 가사노동에는 화폐소득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때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 사건 판결 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되는 화폐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주부의 경우보다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혼인 관계가 깨어진 경우 생계 및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수입노동을 통한 화폐소득을 벌어들여야 할 경우 그 동안 시장노동에 종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노동 능력 및 기술 저하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입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렇듯, 이혼, 별거, 배우자의 사망이나 불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전문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계속해 온 상호의존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시장노동에만 종사했던 남편은 가사노동의 기술부족으로 생활이 곤란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시장제화로의 대체가 가능하므로, 전업주부에 비하여 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문숙재, 윤소영, 2000).

## 2.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시간계약은 사용된 시간의 합계가 총가용시간과 같아지는 점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시간계약은 시간 배분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 1993). 즉,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을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로 분류할 때,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들(조희금, 1997; 허경옥, 1994)에서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성의 총노동시간의 증가는 여성의 여가시간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연구한 결과들은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이기영, 김의숙, 서창원, 이승미, 1994; 이기영, 이승미, 1994; 조희금, 1993; 조희금, 1997; 한경미, 1991; 허경옥, 1994). 이를 평일과 휴

일로 나누어서 정리해보면, 취업주부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나타난다. 전일제로 취업한 주부는 남편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적은 수입노동시간을 가지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약 2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업주부 남편의 약 58%, 취업주부 남편의 약 51%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사노동시간과 수입노동시간의 대체관계는 주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의 절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말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반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반대로 늘어나는데, 이는 가사노동에 우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가 줄어든 수입노동시간 대신 가사노동에 자신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평일의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휴일의 시간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일요일에 취업주부가 4-6시간 이상을 노동시간에 할애하는데 비해, 남편의 전체 노동시간은 주부의 절반정도로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남녀간 시간분배상의 불균등문제, 즉 취업주부의 이중부담문제가 두드러진다.

또한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전체 노동시간을 통하여 남편과 주부의 노동시간을 본 결과(조희금, 1997)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35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전체 노동시간은 주부보다 1시간 20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는 신전통주의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서, 부인이 전일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평일 부인의 여가생활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주부는 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하기 때문에, 주부의 생활시간구조는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조희금·이기영·이연숙·김외숙(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장시간 노동은 자신의 여가시간을 격감시키고, 많지 않은 가사노동시간을 없애며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가사분담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helton(1992)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지위는 수입노동시간에 차이를 가져오는데, 기혼여성의 지위는 수입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데 반해, 기혼남성의 지위는 오히려 수입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고, 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Becker의 시간배분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 구매한 상품이 소비되기까지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가정은 소비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에 인적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종 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므로 가정노동은 생산활동이다(문숙재, 1993). 따라서 가정도 재화와 시간을 결합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하는 단위이며 가정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적 활동이다. 가정생산모델에서는 소득에 근거한 시장재의 소비가 효용을 창출한다는 고전적인 견해와는 달리, 투입요소로서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으로 가정생산물(household commodity)이 창출되고 이 생산물이 효용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결국,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신가정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시간배분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원의 최대효용과 만족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Berk, 1980; 허경옥, 199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정 구성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정내 효용을 측정할 때에는 단지 경제적인 금전자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적 기여를 통한 평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측정된 총노동시간량을 통해 혼인생활 중의 노동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산정된 총노동시간을 토대로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하여 가계의 노동시간 기여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총노동시간을 산정한다.

둘째, 총노동시간을 기초로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하고, 가계에 대한 노동기여도를 평가한다.

#### 2. 자료 및 분석방법

##### 1) 조사도구 및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로서,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의 기간동안 자기기입식조사 방법을 통하여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가구관리종합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만 10세이상 가구원이다. 본 연구는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산정하여 가정을 위한 시간적 기여를 평가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 중 기혼이며 시간관련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한 가구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수는 50,406개였다.

##### 2) 자료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제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분석에 사용되는 총노동시간은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산한 것으로서 직무의 난이도와는 관계없이 노동시간의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는 것이다. 노동분담비는 취업 형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구

분하여 이들의 총노동시간을 조합하여 산정하였다.

노동분담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내의 노동분담비를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나, 자료를 통하여 한 가정의 남편과 주부의 취업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하여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실제 적용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직업형태의 부부를 포함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총8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직업유형에 따라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Duncan 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한 자료의 구체적 사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맞벌이 부부형 가정의 경우 한 가정안의 노동분담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인 취업남성과 임금근로자인 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 부부의 노동분담비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자인 취

업남성과 무급가족종사자인 여성의 총노동시간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전업주부와 임금근로자인 취업남성으로 구성된 부부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인 취업남성과 비취업자인 여성의 총노동시간비를 통해 노동분담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총노동시간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집단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측정하였다. 10대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10대와 20대를 합하여 사용하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혼인연령이 10대 후반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혼인연령이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노동시간

###### 1) 직업노동시간

<표 2>는 직업유형과 연령대별로 직업노동시간의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연령	연령대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인 연령 집단별로 분류하였으나 10대의 표본수가 너무 작아 20대와 통합시킴	
시간	총노동시간	고용된 일·자영업+농림어업을 제외한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구직활동+일관련 물품행동+기타 일관련 행동	
	가사노동시간	음식준비 및 정리+의류관리+청소 및 정리+집관리+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가정경영+기타 가사일+가정관리 관련 이동+미취학아이돌보기+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배우자 보살피기+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그 외 가족 보살피기+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직업	취업	임금근로자	국가, 공공기관 및 단체, 회사, 민간기업, 사회복지센터, 교회, 조합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 등에서 일하고 월급, 봉급, 일당, 봉사료, 샅 등 현금 또는 현물로 받는 사람을 말하며 직위와는 관계없음
		고용주 및 자영업자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규모라도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이며, 자영업자는 일이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수행되며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함
	비취업	무급가족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농업, 가게 등)에서 한 주 동안 적어도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혈연관계에 있으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일을 도운 경우나 같은 가구내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 임금근로자로 분류
		비취업자	무급가족종사일이나 수입이 되는 일을 한 주간 한 시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변수는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정의한 것임

〈표 2〉 연령별 직업노동시간

(단위: 시간)

구분	1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F값)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남성	임금근로자	1,041	8.41	A	4,564	8.23	A	3,443	8.37	A	1,892	7.96	A	595	7.78	A	36	7.01	B	11,571
	고용주및 자영업자	169	7.84	A	2,040	8.29	A	2,662	8.00	A	1,975	7.41	B	1,498	6.72	C	470	5.70	CD	8,814
	무급가족 종사자	42	6.00	B	66	6.76	B	84	5.09	D	56	5.44	D	100	4.79	E	104	4.55	E	452
	비취업자	98	0.76	D	413	1.20	D	487	0.86	E	776	0.75	E	1,199	0.47	F	808	0.31	F	3,781
여성	임금근로자	764	6.46	B	2,382	6.25	B	1,919	7.14	B	934	7.38	B	316	7.29	B	36	8.14	A	6,351
	고용주및 자영업자	130	5.95	B	814	6.26	B	944	7.10	B	462	7.02	B	226	7.11	BC	50	6.11	C	2,626
	무급가족 종사자	254	4.67	C	1,123	5.72	C	1,322	6.54	C	1,067	6.23	C	900	5.97	D	178	5.32	D	4,844
	비취업자	2,166	0.07	E	3,966	0.15	E	2,502	0.25	F	1,788	0.20	F	1,107	0.44	F	438	0.41	F	11,967
계 F값	4,664 F=1003.23***			15,368 F=2030.85***			13,363 F=1411.80***			8,950 F=1059.49***			5,941 F=788.43***			2,120 F=366.18***			50,406	

\*\*\*p < .001

평균을 제시하고 이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별 직업노동시간을 살펴보면, 30대까지는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자의 각 직업집단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여성보다 남성의 직업노동시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대 이후부터는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직업노동시간이 남성무급가족종사자의 직업노동시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자의 경우 50대까지는 남성의 직업노동시간이 여성의 직업노동시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구직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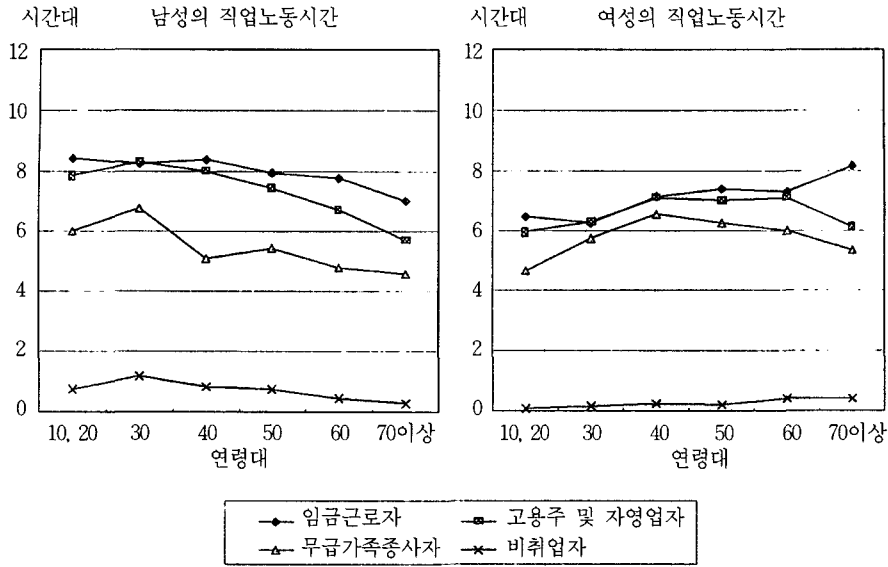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직업노동시간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된다.

연령에 따라서 남성의 직업노동시간은 대체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성의 직업노동시간은 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가장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 2) 가사노동시간

〈표 3〉은 직업유형과 연령대별로 가사노동시간의 평균을 제시하고 이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사노동시간은 모든 연령대와 직업 집단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비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임금근로자의 순서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업 유형별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취업자의 노동시간은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임금근로자가 남성임금근로자보다, 여성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남성 고용주 및 자영업자보다, 여성무급가족종사자가 남성무급가족종사자보다, 여성 비취업자가 남성비취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사노동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같은 비취업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하기



〈그림 1〉 연령별 직업노동시간

〈표 3〉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10분)

구분	1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F값)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남성	임금근로자	1,041	0.79	E	4,564	0.73	EF	3,443	0.50	E	1,892	0.53	E	595	0.70	E	36	0.78	C	11,571
	고용주및 자영업자	169	0.84	E	2,040	0.67	F	2,662	0.55	E	1,975	0.62	E	1,498	0.75	E	470	0.75	C	8,814
	무급가족 종사자	42	1.28	DE	66	1.03	E	84	1.32	D	56	0.83	E	100	0.82	E	104	0.57	C	452
	비취업자	98	1.48	D	413	1.48	D	487	1.32	D	776	1.21	D	1,199	1.52	D	808	0.95	C	3,781
여성	임금 근로자	764	3.54	C	2,382	4.07	C	1,919	3.42	C	934	3.19	C	316	3.25	C	36	2.78	B	6,351
	고용주및 자영업자	130	4.03	C	814	4.20	C	944	3.58	C	462	3.42	C	226	3.26	C	50	2.81	B	2,626
	무급가족 종사자	254	5.89	B	1,123	4.83	B	1,322	3.95	B	1,067	4.06	B	900	3.67	B	178	3.25	B	4,844
	비취업자	2,166	7.57	A	3,966	7.47	A	2,502	6.29	A	1,788	6.02	A	1,107	5.32	A	438	4.13	A	11,967
계 F값	4,664 F=829.34***			15,368 F=3953.33***			13,363 F=2666.71***			8,950 F=1519.32***			5,941 F=630.57***			2,120 F=169.54***			50,406	

\*\*\*p < .001



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약 5배 이상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그림 2>에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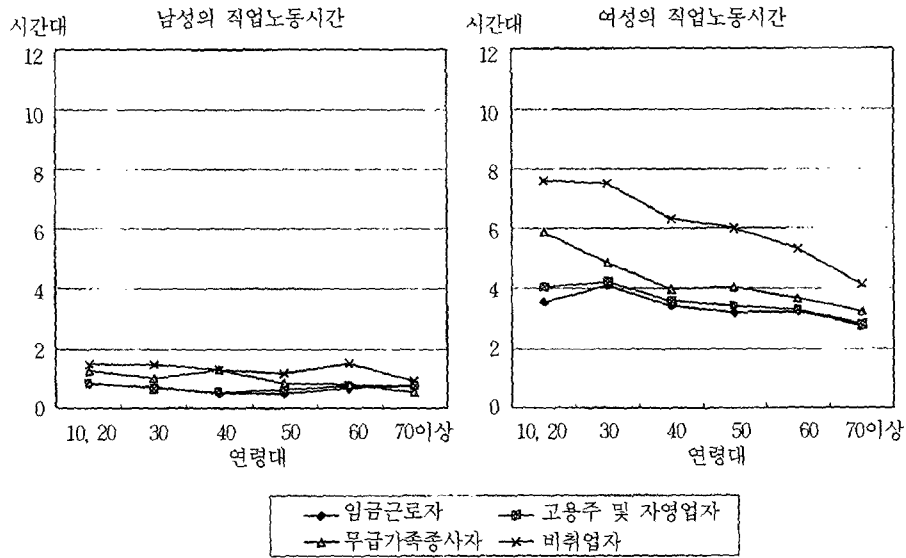
<그림 2>를 통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특히 비취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율이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경미(1991)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 연령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영·이승미(1994)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 중반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전체 가사노동시간과 자녀 돌보기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경옥(1994)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주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자녀 양육시간을 포함하여 측정된 가사노동시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시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3) 총노동시간

<표 4>는 연령대별로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총합한 총노동시간을 살펴본 것이다.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자의 각 직업 유형별로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비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 유형과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직업노동시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임금근로자의 총노동시간이 남성 임금근로자의 총노동시간보다, 여성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총노동시간이 남성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총노동시간보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총노동시간이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총노동시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총노동시간의 변화는 <그림 3>에 제시된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연령대에서 비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모든 남성집단보다 총노동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론적으로 직업 유형에 따라 총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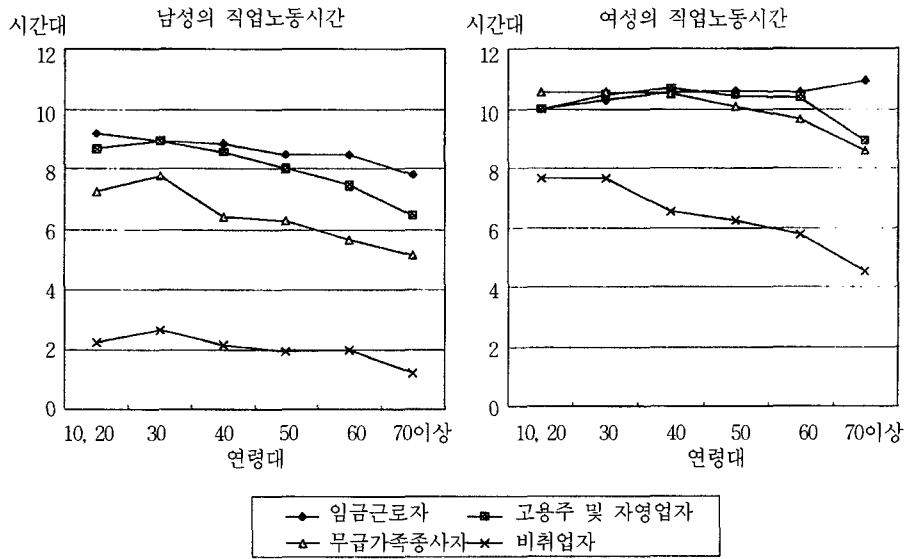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표 4> 연령별 총노동시간

(단위: 10분)

구분	1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F값)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남성	임금근로자	1,041	9.20	B	4,564	8.96	B	3,443	8.88	B	1,892	8.49	B	595	8.48	C	36	7.79	C	11,571
	고용주및 자영업자	169	8.68	B	2,040	8.96	B	2,662	8.55	B	1,975	8.03	B	1,498	7.47	D	470	6.46	D	8,814
	무급가족 종사자	42	7.27	C	66	7.78	C	84	6.41	C	56	6.27	C	100	5.62	E	104	5.13	E	452
	비취업자	98	2.24	D	413	2.69	D	487	2.18	D	776	1.97	D	1,199	1.99	F	808	1.25	F	3,781
여성	임금근로자	764	10.00	A	2,382	10.31	A	1,919	10.56	A	934	10.57	A	316	10.53	A	36	10.93	A	6,351
	고용주및 자영업자	130	9.98	A	814	10.46	A	944	10.68	A	462	10.44	A	226	10.37	A	50	8.91	B	2,626
	무급가족 종사자	254	10.56	A	1,123	10.55	A	1,322	10.49	A	1,067	10.09	A	900	9.65	B	178	8.58	B	4,844
	비취업자	2,166	7.63	C	3,966	7.63	C	2,502	6.55	C	1,788	6.22	C	1,107	5.76	E	438	4.54	E	11,967
계	4,664			15,368			13,363			8,950			5,941			2,120			50,406	
F값	F=124.73***			F=428.60***			F=596.36***			F=603.00***			F=614.73***			F=289.17***				

\*\*\*p < .001



<그림 3> 연령별 총노동시간

하며, 또한 같은 직업 유형이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총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부부의 노동분담률

남편과 주부의 노동분담률을 살펴보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평균시간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각 연령대별로 총노동시간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우선, 직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직업 유형에 따른 집단이 4개이고 여성의 직업 유형에 따른 집단이 4개이므로 남성과 여성의 집단을 모두 조합하면 16개의 집단이 되며, 이 중 논리상 불가능한 조합(예를 들면, 한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데 다른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최종 11개의 집단이 분석 대상에 사용된다.

〈표 5〉는 앞에서 제시한 연령별 총노동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 가정 내의 남편과 주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가정 내의 다른 가족구성원과 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즉, 가정 내의 자녀나 기타 타인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노동분담률은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하여 측정된 총노동시간이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노동시간 변수는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측정되었을 뿐, 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각자의 일에 대한 생산성이 다르고, 같은 일이라 하여도 가정생활주기 및 기타 가정의 특성에 따라 한 가정내에서 그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노동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노동분담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노동의 형태에 따라 남편과 주부의 직업 조합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각 직업에 해당하는 남편과 주부의 평균 총노동시간의 합을 전체로 하여, 남편과 주부 각각의 총노동시간이 전체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로서 그 비율을 파악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다. 본 자료는 남편의 연령대와 주부의 연령대를 일치시켜 측정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만약 연령대가 서로 다르다면 위의 값과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개인이 속한 연령대의 값으로 상대적 비율을 측

〈표 5〉 연령별 실질 노동분담률

(단위: %)

구분		연령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임금 근로자 남성	임금근로자여성		48 : 52	46 : 54	46 : 54	45 : 55	45 : 55	42 : 58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48 : 52	46 : 54	45 : 55	45 : 55	45 : 55	47 : 53
	비취업여성		55 : 45	55 : 45	59 : 41	59 : 41	61 : 39	65 : 35
고용주 및 자영업 남성	임금근로자여성		46 : 54	46 : 54	45 : 55	43 : 57	42 : 58	37 : 63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47 : 53	46 : 54	44 : 56	43 : 57	42 : 58	42 : 58
	무급가족종사자여성		45 : 55	46 : 54	45 : 55	44 : 56	44 : 56	43 : 57
	비취업여성		53 : 47	55 : 45	58 : 42	57 : 43	58 : 42	61 : 39
무급가족 종사자 남성	자영업여성		42 : 58	43 : 57	38 : 62	38 : 62	35 : 65	37 : 63
비취업 남성	임금근로자여성		13 : 87	13 : 87	11 : 89	10 : 90	13 : 87	8 : 92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13 : 87	12 : 88	11 : 89	10 : 90	13 : 87	10 : 90
	비취업여성		16 : 84	17 : 83	17 : 83	17 : 83	22 : 78	19 : 81

정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자료를 통해 측정된 값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46%, 여성은 약 54%의 비율로 노동을 하고 있다. 자영업 남성과 무급가족종사여성인 가업협력형 가정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46%, 여성은 약 54%의 비율로 노동하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55%, 여성은 약 45%의 비율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평균 총노동시간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실제 개별 사례에서 한 가정의 노동분담 비율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러한 분포를 취하고 있음을 살펴보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임금근로자남성 대 비취업여성, 고용주 및 자영업 남성 대 비취업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 조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분담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취업여성과 비취업남성의 부부조합을 제외한 여성의 노동분담률은 최소 약 52%의 비율에서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여 최대 65%정도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의 판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업주부의 노동분담률은 비취업남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의 기혼여성을 제외하고는 약 40%에서 최대 약 4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70대 이상의 전업주부는 약 35%에서 3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 여성을 주부로 두고 있는 40대 이상의 무급가족종사남성의 노동비율인 35%에서 38%와 거의 유사한 비율이다. 전업주부의 노동분담률은 다른 집단의 여성과는 반대로 연령 증가에 따라 노동분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령대에 따른 분석에서는 한 연령대의 상황으로 혼인생활 전반의 총노동시간을 유추할 수

는 없다. 혼인 기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한다면 어느 연령대의 상황이 다른 연령대의 상황과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한 당사자가 이혼당시에는 전업주부의 상태에 있지만 과거에는 직업노동에도 종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동을 분담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판례를 살펴볼 때 전업주부는 대체로 약 18%에서 3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취업남성의 경우 노동분담률은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분담률은 최소 약 10%에서 최대 약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직업노동시간이 거의 없는 비취업자인 기혼 비취업여성은 비취업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총노동시간량이 많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비취업여성은 비취업자인 기혼 단순한 무직자로 간주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여성은 취업남성에 비하여 노동분담률이 더 높으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노동분담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부의 높은 노동분담률에는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가 크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격상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양이라는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40~47%의 비율로 노동기여를 하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약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총노동시간 산정을 통해 혼인생활 중의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하여 가계에 대한 시간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분석에서는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총합한 총노동시간을 측정하여 성별과 직

업유형별로 나누어 평균노동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남편과 주부의 노동분담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을 성별과 직업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총노동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총노동시간은 대체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업노동시간을 측정할 결과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의 노동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총합한 총노동시간 측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노동시간 산정을 토대로 하여 가정내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할 결과, 임금근로자 남성과 비취업여성, 자영업 남성과 비취업여성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여성의 노동분담률이 남성의 노동분담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연령과 혼인기간이 파악된다면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측정할 노동시간자료를 적용하여 실제로 현재까지의 가사노동 분담률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료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서, 전업주부라 하여도 약 40%에서 50%에 달하는 노동분담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혼인생활 중의 잉여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독일의 잉여청산제<sup>1)</sup>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시간자료를 사용하여,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 측정을 통해 노동분담률을 산정하여 부부의 노동비율을 측정하였다. 객관적인 노동시간 자료를 근거로 한 본 연구는 실제 재산분할판결시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총노동시간을 통

하여 산정된 노동분담률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에 있어서 노동기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별히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미비로 노동기여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 전업주부의 기여를 입증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지표는 실제 재산분할청구 사건 판결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시도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한 가정내 노동분담률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의 미비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평균총노동시간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부부의 노동분담률을 측정하였으나, 노동분담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한 가정내의 노동분담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더 타당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 ■ 참고문헌

- 김영갑(1991). 재산분할청구권. 사법논집, 22, 209-251.  
 김찬식(199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실증적 연구-그 청산기준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태홍(2000).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결정요인과 특징. 여성연구, 59, 93-114.  
 동아일보(2001). 5월 22일자. 31면(사회).  
 문숙재(1993).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문숙재, 김순미, 윤소영(1996). 취업여성의 노동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2),

1) 잉여청산제는 혼인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에 측정할 당초재산과 혼인 생활이 종료되는 시기에 측정할 재산인 종국재산을 측정할 후, 각 배우자의 재산 증가분인 잉여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반분하여 청구하는 형태이다(조미향, 1990). 이러한 방법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의 잉여분만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하며, 이러한 잉여분이 동등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통한 전업주부의 기여도 직업노동을 통한 기여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진다.

- 99-112.
- 문숙재, 윤소영(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 문숙재, 정영금(1993).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3-24.
- 민유숙(1993). 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범위. 재판자료, 62, 401-433.
- 이기영, 이승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 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11-26.
-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화숙(1990). 개정 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8(1), 149-180.
- 이해진(1991).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소고. 변호사, 21, 211-227.
- 조미향(1990). 재산분할청구권 1. 사법행정, 356, 80-86.
-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4.
- 조희금,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2000). 한일양국 전 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14.
- 진수희(1995). 모성보호의 사회화와 여성고용. 정책논단(여의도 연구소), 3, 103-109.
- 통계청(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및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2-190.
- 한국여성개발원(1998). 부부재산관계관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기여도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Shelton, Beth Anne (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s in paidwork, housework and leisure*. Westport: Greenwood Press.